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이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학리 883번지 일원
- 입주시기 : 2029년 02월 예정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 지상27층 2개동, 총 262세대 중 일반분양 262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계
세대수	53	26	104	79	262

II 분양가 및 분양조건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분양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분양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59A	1	(5)	1	(5)	1	(5)	1	(5)	1	(5)
59B	1	(5)	1	(5)	-	-	1	(5)	-	-
84A	2	(10)	2	(10)	2	(10)	2	(10)	2	(10)
84B	2	(10)	1	(5)	1	(5)	2	(10)	2	(10)

- 확정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는 예비대상자 배정 세대수입니다.
- ※ 분양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IV 분양일정(예정)

*분양일정은 예정으로 변동될 시 추후 재안내 드립니다.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07.10.(금) 예정	• 춘천리버뷰아이파크 홈페이지 (https://www.i-park.com/chuncheon) • 분양문의 : 1577-0262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7.20.(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10:00~14:00)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07.29.(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전입 등의 사유 시)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단,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

구분

내용

자격요건 / 유의사항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절차]

자격요건
갖춘 자
(청약자)

→

해당 추천기관에
신청
(신청기간 및 선정일은 해당 추천기관에 문의)

→

해당 추천기관
선정

→

청약홈
인터넷 신청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당첨자
발표

*상기 절차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기관부서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와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첨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
불가
사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구분

공급기준

입주자
저축
자격 요건

무주택
요건

내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인 "소형·저가주택등"은 2024.12.18.시행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9호"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일부 유형(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구분

주택 범위

주택 처분 / 소유기준일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유주택에 해당됨.

- 공유지분, 공동소유,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소유자 전원 유주택에 해당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밖에 주택소유/처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이하	1억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이하	5억원	3억원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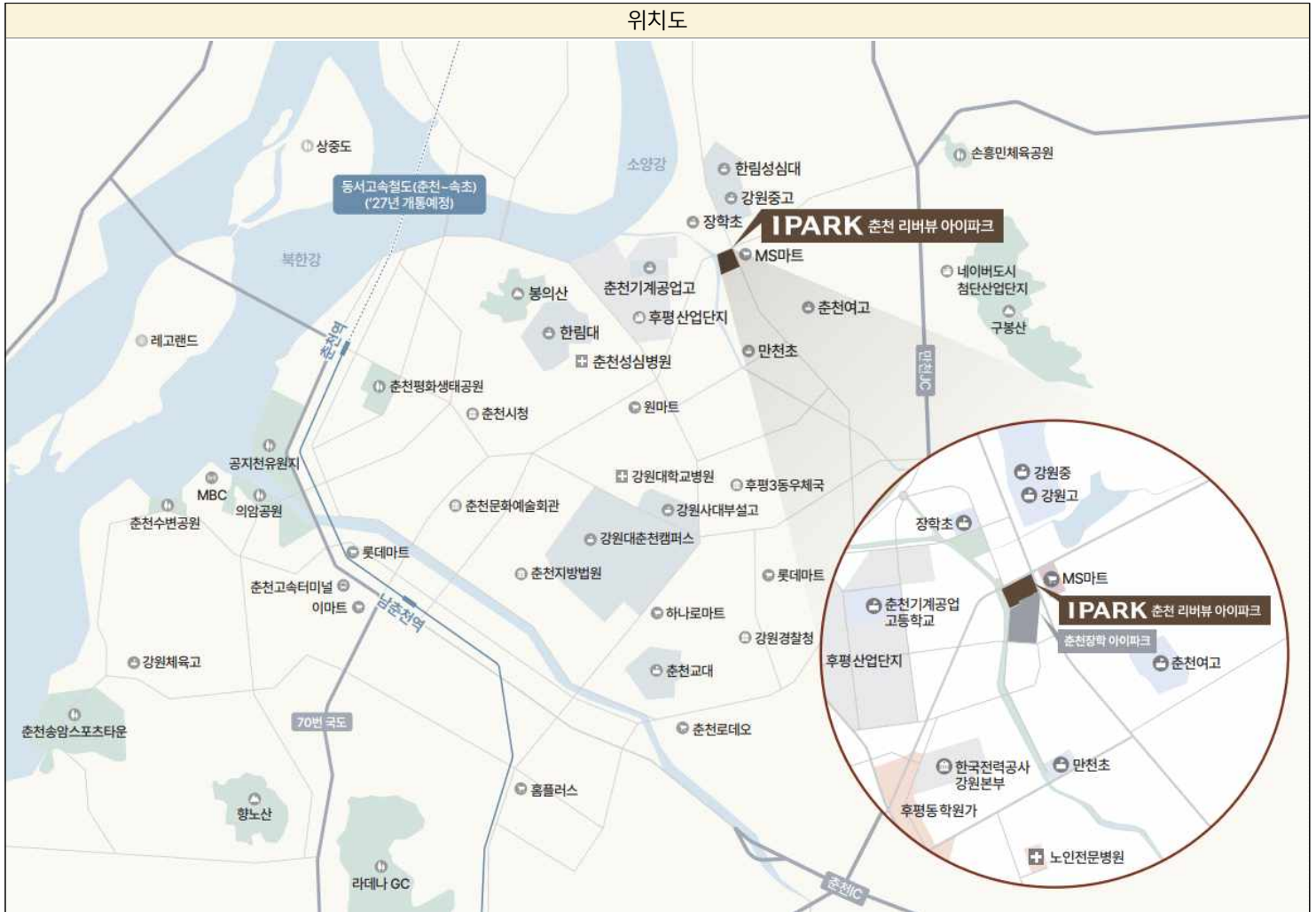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5.10.3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소	분양문의	홈페이지	시행사 및 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267	1577-0262	https://www.i-park.com/chuncheon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상기 위치도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